



빛의 마을

2021 통권 302호



청소년기후행동프로젝트 _ 새로이 똑막, 쓸모있는 재탄생 [2021. 09.25 (토)]

Interview

광주에 사는 고려인 동포들을 돕고 있는

고려인동행위원회



박용수 위원장

고려인동행위원회, 한신대 초빙교수

1. 고려인동행위원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광주전남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역량을 동원해 광주에 사는 고려인 동포들을 돕고 있습니다. 2018년 고려인동행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현재 400여 명이 참여 중입니다. 주로 고려인들을 지켜주고, 지역사회에 잘 정착해 더불어 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과 의료지원단, 미디어소통단, 상생협력단이 자율적으로 활동 중입니다. 올해가 광복 76주년인데, 연해주 고려인들이 여전히 꿈에도 그리운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분단의 최대피해자인 고려인 국적회복 문제부터 풀어야 통일의 물꼬가 트일 것입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광주시민들이 고려인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좋은 인식을 하게 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2. 고려인 동포 관심 가졌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려인 마을을 섬기는 이천영 목사와 오랜 인연에서 시작됐습니다. 2006~7년 광주CBS본부장 재임 때, 이 목사와 함께 이주민 자녀 학교건립을 위해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CBS스튜디오에서 매주 기도 모임을 했는데, 놀랍게도 오늘의 새날학교가 그때 기도의 응답입니다.

1년 내내 고려인 관련 세미나와 전시회, 공연, 방송 출연을 통해 대대적으로 고려인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 초대받았던 '나는 고려인이다' 퍼포먼스 공연은 시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줬고, 그때부터 '고려인마을 홍보대사'라는 명예로운 칭호가 따라다녔죠.

새날학교는 세상에 없었던 기적의 무상학교입니다. 새 하늘, 새 땅에서 새날을 산다는 뜻인데, 제가 제안한 것이 채택됐었죠. 이후 새날학교 후원회장을 맡았는데, 그때 고려인들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독립투사 후손, 고려인들의 수난과 아픔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일제 식민과 남북 분단, 강제 이주의 역사적 소용돌이 피해가 고스란히 고려인들의 몫이 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2017년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 기념사업회장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3. 광주 고려인 마을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2003년 고려인 3세 신조야 대표와 이천영 목사의 만남에서 마을이 시작됐습니다.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선교 활동하던 이천영 목사가 신조야 대표(고려인마을 대표) 가족의 광주 정착을 도와주었고, 이후 전국의 고려인들을 광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아이들을 무상으로 가르치고, 아플 때 치료비를 대줬더니, 중앙아시아까지 입소문이 났습니다. 광주에 이천영 목사를 찾아가면 살길이 있다고. 인천공항에 내리는 사람마다 광주 이천영을 찾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2010년 이후 이들은 불과 10년 사이에 7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 일이 월곡2동에 고려인들로 넘쳐나게 된 배경이죠. 지금 고려인 마을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국적인 볼거리, 먹거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독립투쟁하다가 강제 이주를 당했던 고려인 동포들에 통한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나아가 고려인들이 광주를 고향 삼아 광주시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생한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고려FM방송까지 내년 3월 정규방송을 시작하면 광주는 명실상부한 다문화 평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Y법률지원단 어떤 활동을 하나요?

지난 2018년 고려인마을과 광주Y법률지원단이 MOU를 체결한 것이 계기가 됐었습니다. 고려인동행위원회 법률지원단 이름으로 고려인 마을에서 매주 월요일 무료법률지원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강행욱, 윤춘주 변호사 등 20여 분과 정강희 노무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이 겪고 있는 불법 해고와 체불임금 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주고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고려인들에게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5. 지역사회 연대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고려인, 이주민들에 대한 소외와 차별 해소를 위해 범시민적 노력이 시급합니다. 민주·인권·평화 도시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고려인과 이주민들을 우리와 똑같은 시민으로 대접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동등한 시민이자, 정다운 이웃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안마 민주화를 위해 연대하듯, 광주의 고려인, 이주민들과도 견고한 연대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려인 마을 인근에 이주민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 고려인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이주민 공동체들에 소통·교류의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뜻과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립니다. 빛의 도시, 광주가 '인류평화를 구현하는 평화공동체'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6. Y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광주 Y가 가지고 있는 조직사업 노하우와 시민교육, 청소년 콘텐츠가 고려인 마을과 접목하면 시너지효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고려인 상생 복합플랫폼이 건립되면 광주 Y와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 운영하는 고려FM방송(93.5 MHz)이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10W로 소규모 마을 방송이긴 하지만, 테스트 결과 광주 전역이 가청권입니다. 광주 Y에서 고려FM 시민 리포터 양성과정을 개설해서 일정부분 방송 제작, 진행을 맡아 줄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미디어 교육, 시민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포노사피엔스시대, 사람이 미디어인 세상에서 좋은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빛의 마을

GWANGJU YMCA MAGAZINE

우리의 이웃



광주YMCA 홈페이지
<https://www.iymca.or.kr>



광주YMCA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jymca>



광주YMCA 유튜브
<https://www.youtube.com/광주YMCA>

- 2 인터뷰 고려인동행위원회 박용수 위원장
- 5 성서이야기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르라
- 8 오방정 특집 3부작 오방 최흥중 선생과 '광주읍 가옥 철거구 공민구제연구회' #2
- 14 Y정신 광주YMCA 발달장애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발자취

시민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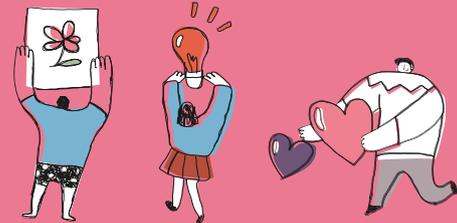
- 16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개선 추진현황
- 32 기후위기, 행동해야 희망이 찾아온다

기획특집

- 35 김홍빈 대장을 추모하며...
- 37 시민과 시민성
- 39 장헌권 목사의 영화 산책
- 42 광주YMCA 서평
- 43 광주YMCA 추천 시

Y뉴스

- 44 광주YMCA 2021년 하반기 주요뉴스



창간	1949년 12월 15일	발행인	문기전	편집인	류현민	회무위원장	최영준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6(금남1가 19-4) · 금남로분관 062-232-6131 · 서구지회 062-654-4300 · 광주광역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062-227-1388 · 시립미술관어린이문화센터 062-613-7180 · 일곡청소년문화의집 062-575-0924 · 푸른공창작학교 062-606-0222	발행일	2021년 10월 20일	· 광산지회 062-971-5533 · 나주센터 061-331-1388 · YMCA스포츠센터 062-234-0071 · 오방최흥중기념관 062-654-1920 ·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2-229-3308 ·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062-232-1324			

이메일 gjymca@hanmail.net 편집실무 류현민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르라

시편 34:11-16

고흥문 | 봉선벤엘교회 담임목사

시편은 기도이며 동시에 찬양이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안에 들어 있다. 기도하는 당사자와 다른 이들에게까지 교훈하는 내용인데, 기도라면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인데 교훈까지 하다니, 기도에 대해 확장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시편은 찬양과 감사와 교훈을 함께 들으면서도 입술로 고백하는 매력이 있다.

시편 34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이다. 사무엘상 21:10-15 내용인 사울 왕을 피하여 적국 왕 앞에서 벌어진 다윗의 처지와 관련이 있다. 이 시절 이스라엘의 안팎에서 다윗은 너무나 웅색한 처지였다.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그 시편 34편에서 11-16절의 구절이 권하는 교훈에 우리의 눈과 귀를 향하고 기울여 보자.

1. 복 받을 자들이라.

11 너희 자녀들이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다

12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성경은 우리를 계속 초청한다. “너희 자녀들이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초청에 우리는 무시할 수 있으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자세이다. 이 두려움은 생명과 관련 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구원자로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을 원하는 사람! 생명은 목적이면서 수단이고 과정이며 감격과 신비로움이다. 또한 예술이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에서 맞닥뜨리는 것도 ‘생명’이다. 근본이며 목적이 되는 그 질문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사람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당신은 이 복과 장수와 생명을 원하지 않는가?

2. 선과 화평은 쉽지 않다.

13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14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 질문의 열쇠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은 입술과 혀를 주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고보서는 경고한다. 광풍 속에 뜬 큰 배를 작은 키로 운항하고, 많은 나무를 작은 불꽃으로 다 태우듯 혀와 입으로 만든 파괴적인 현상을 경고했다. 혀와 입술로 파괴하는 악과 거짓을 벌이지 말고 선과 화평을 이뤄야한다. 악과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얼마나 우리는 익숙한가. 우리는 개인, 사회, 국제관계, 역사의 진실 앞에 혀를 통해 거짓으로 회피하는 악을 만난다. 그 거짓으로 포장된 아슬아슬한 입술을 본다. 또한 자신 안에 도사린 악과 거짓을 우리는 직시한다. 그러므로 악과 거짓은 혀와 입술만으로도 파괴적이니,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르고,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는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라야 한다. 선을 행하기는 어렵고 더더욱 화평은 쉽지 않다. 우리는 악과 거짓이 나쁘다고 알고 있고 그 폐해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악과 거짓 속에 머무른다. 우리는 튀지 않고 편리하고 크게 부각되지 않으면서 괜찮다며 선과 화평을 멀리한다.

3. 하나님의 귀에 기도하자

15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6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선과 화평을 멀리하는 그대여! 의인을 향한 여호와의 눈, 그분의 귀를 의식하자.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꼭, 어른이 어린아이의 키에 맞추고 귀를 아이의 입술에 가까이 대듯이 말이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그의 얼굴은 향하신다. 그러나 동행이 아니라 대결하고 심판한다.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 돌이키지 않으면 악인들의 자취는 사라진다. 옛날 기록의 형벌에 말살형이 있는데 죄인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지워버리는 형벌이다. 여호와는 현재뿐 아니라 과거 미래까지 악한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신다. 이 말씀은 악인보다는 이 시편을 읽은 모든 사람에게 향하신다. 여호와의 눈길에 포근함과 위로와 힘을 얻고, 귀 기울이시는 그분께 기도하자. 그분의 얼굴을 의식하여 악한 길에서 벗어나자. 그분 안에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선을 행하고 평강을 찾을 수 있다.



오방 최흥종 선생과 '광주읍 가옥 철거구 공민구제연구회' #2

정경운 |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2) '공민구제연구회' 활동과정

이 구제연구회가 단순히 지역문제에 대한 유지들의 형식적 조직체가 아니라, 실질적 대책을 위한 조직체였다는 것은 그들의 발 빠른 활동상황과 더불어 각 부의 담당역할이 분명했다는 것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회합이 끝난 바로 다음날부터 시작해 17일까지 구제연구회 조사부가 천정 일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갖고 교섭부가 18일에 읍장 면담까지 실시¹⁾한 것이다. 조사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천정 일대에서 헐린 토막이 198호이며, 해당 공민은 86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결과를 갖고 교섭부는 당시 광주읍장이던 오촌신길(奧村信吉)을 찾아간다. 그러나 신병을 이유로 출근이 늦던 읍장을 기다린 끝에, 오촌 읍장과 부읍장(박계일)을 면담하게 되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읍 당국의 대책은커녕 금년(1932년) 안에 호남정, 누문정을 포함해 가옥 500여 호를 철거할 계획이라는 말만 통보 받았을 뿐이었다.

결국 구제연구회는 읍 당국과 교섭이 간단치 않음을 판단하고, 주변을 공략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다. 먼저 당시 여름휴가를 떠난 전남도지사가 8월 21일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튿날인 22일 시도삼조(矢島杉造) 도지사를 방문한다. 구제연구회 위원들은 도지사에게 광주읍 당국이 아무런 대책 없이 공민가옥을 철거했다는 것과 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이에 도지사는 “잘 고려하여 좋은 방침으로 처리”하겠다고 답을 주게 된다.²⁾

1) 『동아일보』 1932년 8월 19일자 「천정(泉町) 철거가(撤毀家)만 198호」에 '구제연구회가 천정 일대를 현장조사한 결과와 함께, 이 결과를 갖고 당시 광주읍장이던 오촌신길(奧村信吉)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병 때문에 출근하지 않아 구제연구회 위원들이 그의 출근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또한 같은 신문 1932년 8월 21일자 「금년 철거 500호, 2천 공민 하처거(何處去)」에는 18일에 구제연구회 교섭부 위원들(최영욱, 김재천, 최원순, 김용환 등 4명)이 읍장과 부읍장을 면담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 한편으로, 21일자 기사에 따르면, '구제연구회'의 조사는 우선 천정 일대를 마친 후, 향후 광주읍의 철거 계획이 있는 누문정(樓門町), 임정(林町), 금정(錦町) 등지까지 조사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광주읍 당국에서는 1932년 말까지 하천부지에 있는 토막 500호를 전면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여기에 걸려 있는 공민들의 수효만 해도 2천여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2) 『동아일보』, 「도지사에게 진정, 선처하겠다 언명」, 1932.8.25.

도지사의 긍정적인 답변에 고무된 구제연구회 교섭부는 다시 8월 24일, 광주읍 의원 14명 전부를 구제연구회 간담회에 초대한다. 그러나 당시 광주시내 중앙의원 3층에서 진행된 이 회합에 출석한 읍의원은 6명에 불과했다. 구제연구회 집행위원들과 읍의원들 간의 간담은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었으며, 간담을 통해 읍의원들로부터 얻어낸 답변은 ‘읍의원간친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해보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6명의 읍의원 숫자로는 간담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에, 구제연구회 또한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간친회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8월 30일, 읍의원들은 약속대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광주읍회의실에 열린 간담회에는 읍의원들 이외에도 읍장과 부읍장, 서무주임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들이 장시간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은 “하등 구제책이 없다”는 것이었으며, 이를 ‘구제연구회’에 회답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했다는 것이었다. 평소 광주읍장이 갖고 있던 생각에 읍의원들이 그대로 따른 결론이었다.

읍의원 간담회에서도 하등의 대책이 없다고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귀 지(동아일보-인용자)를 통하여 총독과 내무국장의 말을 보았소이다. 총독과 내무국장이 어떠한 말을 듣고 대답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방에 따라서 사정이 다른 만큼 광주읍에서는 상부의 특별한 명령이 있기 전에는 하등의 대책이 없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동아일보』, 「읍의원도 읍에 합류, ‘구제책 전문’ 회답」, 1932.9.4.)

위의 내용은 읍의원 간담회가 끝난 후, 동아일보 기자가 인터뷰한 광주읍장의 말이다. 총독과 내무국장이 ‘구제연구회’에 어떤 약속을 했건 상관없이³⁾, 지역 사정에 따라 그 해결책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광주읍으로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에 따라서 사정이 다른 만큼”이란 무슨 뜻일까. 이는 광주읍에서 공민가옥철거 사건이 일어나기 전, 조선 내에서 특히 1930년대에 대대적으로 행해졌던 토막민 가옥 철거 문제 및 그 해결방식의 선례와 관련된다. 당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토막민 가옥철거는 아무런 대책 없이 강제로 시행되고 있었는데, 1930년대 초반 경성부 송월동의 경우나 길야정(吉野町)의 경우는 토막민 가옥철거와 관련, 이주대책을 보여준 사례⁴⁾가 있기도 했었다. 당시 『동아일보』는 이 사례들을 전제한 듯, “경성 기타 다른 도시에 전례가 있는 일인데, 이 길을 밟지 않고 광주읍이 강제로 몰아”⁵⁾냈다면, 광주읍

3) 읍의원들의 간담회가 있기 전, 총독과 내무국장이 광주읍 천정 공민가옥 철거 문제에 대해 구제가 필요함을 시인했던 것으로 보인다.(『동아일보』, 「황실수설」, 1932.9.2.) 다만, 이 사건이 당시 어떻게 총독과 내무국장에게 전달되었는지는 기록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

4) 길야정(吉野町)의 경우는 이곳을 담당했던 본정 서에서 토막민 이전 후보지로 효창원을 정해주는 동시에 이전비로 10원씩 지출해준 바 있다(1931년). 송월동의 경우는 당시 170여 호에 8백여 주민들이 토막민들의 거주지가 경성중학교의 소유부지였었는데, 미관상의 이유로 경성중학교에서 퇴거 명령을 내리자, 주민들이 각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지역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6개월에 걸친 지역사회 논의를 거쳐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로 판단, 1932년 3월에 아현리에 있는 면유지 2,070평을 도 지방비로 매입해 이주시킬 계획을 마련하게 되며, 그해 7월에 160호가 아현리로 이전하게 된다.(『동아일보』, 「이전 후보지도 작정 안코 상천하(霜天下)에 축출하면」(1931.10.11); 『중앙일보』, 「송월동 2번지 주민에게 경찰 우복 철거를 명령, 향로무처의 200여 주민 등, 도 당국에 탄원 제출」(1932.3.28.); 『동아일보』, 「아현리 방면에 이주시킬 계획」(1932.3.13.); 『동아일보』, 「송월동 토막민 아현리에 주접(住接)」(1932.7.24) 참조.)

5) 『동아일보』, 「광주읍유지 공민 주민 5백여 호 강제 철거」, 1932.9.1.

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던 차였다. 광주읍장은 광주의 사정이 그런 지역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대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라 발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읍이 철거 공민 대책에 대해 아무런 고민이 없었다는 것은 이 시기에 광주읍의 추가예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철거 공민들과 관련된 구제비용 항목이 아예 없었다는 것에서 확인된다. 읍의원들의 간담회(1932년 8월 30일)가 있던 직후인 9월 2일 오후 3시, 광주읍에서는 임시읍회의 원회를 개최해 소화7년도 추가예산안 14,453원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 이때 광주시내 여러 가지 시설공사를 조속히 시행해줄 것을 요청코자 총독부에 진정하기 위해 예산항목 및 기타 안건을 가지고 상경할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광주읍구역확장의 건, 세무감독국신설의 건, 상수도수원지확장의 건, 광주우편국관사이전의 건, 광주경찰서신축의 건, 광주경찰서장경시승격의 건”⁶⁾ 등 6건뿐이었다. 광주읍장과 읍의원들의 철거 공민 대책에 대한 간담회 결과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남도지사와의 면담 분위기도 좋았거니와, 총독부 당국의 입장 또한 대체 거주지를 마련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황에서 구제연구회로서는 읍의원간담회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던 차였다. 그런데 그 논의 결과가 완전히 상반되게 나오자, 구제연구회는 읍당국에 대해 소리 높여 비난을 퍼붓게 된다.

작일의 귀 지(동아일보-인용자)를 통하여 총독부의 방침을 알았소이다. 총독과 내무국장의 그 말에 틀림이 없다 하면 광주읍장의 의견과 방침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총독부 방침은 그러한 공민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구제할 것이니 당국자로서는 노력하여야 된다는 것이요, 광주읍장의 지금까지의 의견과 방침은 필요가 없으니 노력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일 구제연구회 위원이 방문하였을 때, 읍장은 재정상 부득이 하여 단행하였으니 대책을 고려치 아니했을 뿐이라, 읍의원들에게 문의할 것도 없다는 것을 언명하였고, 그 후 태도로도 그러합니다. 그 후 또 읍장이 여러 사람들에게 언명하였다는 바를 물으면 읍으로서의 대책이 없다는 것을 유일한 방패로 쓰는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그 대책이 분명하게 있어 보입니다.

읍장이 공민들의 갈 곳을 고려하여 본 적이 있으며, 조금이라도 노력하여 본 적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 양심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하나도 없소. 공법상의 수속도 다 밟지 않고 강제로 파궤한 후 구제연구회가 생겨서 그것이 모 일문지에 게재되었고 그것을 본 도지사가 비로소 읍장을 불러서 그 진상을 물은 데에 그쳤습니다. 우리는 읍장이 어느 이상한 심리로 자기의 것을 고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읍장을 옹호하는 모모 방면 사람들의 책동으로 인하여 총독부의 대방침이 얼

6) 『동아일보』, 「광주읍의회 추가예산 결정」(1932.9.7.)에서 인용.

마만한 변화를 가지게 될는지 주목하고 싶습니다.(‘구제연구회’ 모 위원과의 담(談).〔『동아일보』, 「총독 부 방침에 읍 처치 배치」, 1932.9.4.))

읍의원간담회의 회신을 받은 구제연구회는 9월 2일 오후 8시, 서석의원에 모여 장시간 “비분강개한 논의” 끝에 “도 및 읍 당국에 재차 교섭할 사(事), 남선(南鮮) 순시의 우원(宇垣) 총독의 래광(來光)을 기하여 진정할 사, 시민대회를 개최하여 경과를 보고하는 동시에 대책을 강구할 사, 읍당국이 성의를 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로 법적 수속을 할 사”⁷⁾ 등의 사항을 결의한다. 전남도당국 및 광주읍당국과의 교섭을 진행하되, 여의치 않으면 법적 수속까지 불사하겠다는 결의는, 구제연구회가 읍의원간담회의 결과에 얼마나 심한 배반감을 느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들은 일단 읍당국의 입장이 총독부의 입장과는 배치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광주를 순시하게 될 총독을 직접 만나 그 입장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원 총독을 면담하는 9월 8일까지 구제연구회의 활동은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된다.

우원 총독이 광주를 방문한 9월 8일 오전, 구제연구회 위원들(최흥중, 김재천, 최원순 등 3명)은 전남도청 지사실에서 총독을 면담한다. 이들은 총독에게 그간의 진행 상황과 공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알리고, 그 대책으로 임정(林町)에 있는 국유지(1만평 가량)가 적당한 후보지라는 것과 그 땅을 광주읍에 대부하여 공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한다. 이에 총독이 “명쾌한 어조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대답”을 받아낼 만큼, 면담 분위기나 그 성과는 구제연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원 총독의 래광을 기하여 광주읍가옥철거구 궁민구제연구회에서는 최흥중, 김재천, 최원순 3명이 전라남도 지사실에서 우원 총독을 면회하고 화기가 넘치는 간담적으로 진정하였다는데, 그 내용은 여좌하다고 한다.

광주읍에서는 그 기채상환의 필요상 그 소유토지를 처분하려고 궁민 등의 집을 강제로 철거하여 버렸으나 2,000여명의 인구가 도로에 방황하고 있는 것은 인도상으로 광주시가 미관상으로 보아 도저히 방미할 수 없는 바이오니 임정(林町)에 있는 국유지(1만평 가량)가 그들이 이주하기에 가장 적당한 후보지인즉 그것을 광주읍에 대부하여 궁민 등의 안주지대로 하여 달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진정을 들은 우원 총독은 명쾌한 어조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하였다고 하므로, 2,000 궁민의 안주지는 임정으로 결정될 듯하다고 한다.

(『동아일보』, 「임정(林町)의 국유지를 궁민의 안주지(安住地)로」, 1932.9.10.)

7) 『동아일보』, 「읍당국이 무성의하면 최후로는 법적 수속」(1932.9.5.)에서 인용.

총독의 확실한 답변이 효과가 있었던 듯, 이후 읍당국과 구제연구회의 교섭은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 쌍방의 합의 결과는 총독 면담 시에 구제연구회의 제안대로 공민들을 임정(林町)에 이주시키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이에 구제연구회는 9월 10일부터 48명의 인부를 데려와 지평공사를 시작한다.⁸⁾

그러나 9월 19일, '구제연구회'는 느닷없이 광주읍에 “교섭파열 통고”문을 보낸다. 읍당국이 약속을 무시하고 협정을 번복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읍당국이 “읍의 최초 의사를 고집키 위하여 총독 각하의 용화협조하라는 지시를 배반함으로 본 회는 차(此) 이상 읍과 교섭할 여지가 전무케” 되었다는 것이다. 그 통고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소화 7년 9월 19일.

광주읍가옥철거구공민구제 연구회 위원장 최홍중.

광주읍장 오촌신길(奧村信吉) 귀하.

귀하와 본 회 대표 간에 광주읍 가옥 피철헤 공민구제 방침을 수차 협의하였으나 귀하는 약속을 무시하고 재삼(再三) 자의(自意)로 협정을 번복하며 시일을 천연(遷延)시킴으로써 농사를 삼으니 차(此)는 읍의 최초 의사를 고집키 위하여 총독 각하의 용화협조 하라는 지시를 배반함으로 본회는 차 이상 읍과 교섭할 여지가 전무케 됨을 통석히 여기고 자(茲)로 통고함.

(『동아일보』, 「광주공민구제 교섭이 파열」, 1932.9.22.)

위 통고문에서 읍당국이 ‘무시한 약속’과 ‘번복한 협정’이 정확하게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애초에 구제연구회를 조직한 궁극적인 목적이 비단 천정 일대 공민들뿐만 아니라, 당시 하천부지에 토막을 짓고 살고 있었던 공민들 전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까지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교섭파열 통고는 한참 임정 이주지 지평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당시에 갑자기 벌어진 누문정(樓門町)의 가옥 철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읍 당국은 천정 공민들에 대한 구제연구회와의 쌍방 합의를 한 이후인 18일에, 5-6명의 인부를 시켜 누문정에 있던 공민 가옥을 철거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마도 이에 격분한 구제연구회가 읍당국이 약속을 파기했다고 판단, 19일에 교섭파열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구제연구회로부터 통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읍당국의 철거는 20일까지 진행되는 데, 3일 동안 이들이 철거한 누문정 가옥은 30여 호로, 여기서 발생한 유이민은 200명에 달했다.⁹⁾

양측 간의 교섭 파열이 있는 후, 구제연구회의 활동 상황은 『동아일보』를 포함, 어떤 중앙 일간지에도 더 이상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그해 12월 초에 임정에 공민 30여 호가 이주한 사실이 기사화된 것으로 볼 때, 지난 9월에 시작한 지평공사는 교섭 파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

8) 『동아일보』, 「공민 이주지 임정(林町)으로 결정」, 1932.9.12.

9) 『동아일보』, 「광주읍에서 인부시켜 30여 가옥 또 철헤」, 1932.9.26.

다. 물론 그 당시 교섭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그 내용에 이주를 위한 가옥 건축 비용이 들어 있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 천정 국민들은 광주협동조합에서 임정에 마련해주었던 임시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11월 29일 구제연구회 위원들의 모금으로 토막을 다시 지어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임정 입주 당시 상황에 대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한 바와 같이 가옥을 철거당한 국민들은 그 대부분이 산지 사방하여버렸으나 30여 호만은 임정에다가 그 당시에 전기 구제연구회에서 건설하였던 임시수용소를 의지하고 입동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럼으로 전기 연구회에서는 위원 일동이 주머니털이를 해가지고 지난 29일에는 전기한 바의 30여 호가 일제히 토막이나마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그럼으로 30여 호의 국민 140여명은 생활의 근거지를 파괴당한 5개월 만에 겨우 동사를 면할 수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구제회원의 활동으로 30호 토막 건축」, 1932.12.2.)

이로써 7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근 4개월 이상에 걸쳐 진행되었던 광주읍 국민가옥 철거 문제는 임시적으로나마 천정 국민들이 임정으로 이주함으로써 마무리된다.



Y정신



광주YMCA 발달장애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발자취

박지연 | 팀장, 광주YMCA 광산지회

광주YMCA(운영:광산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지적·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초 학습과 사회성 훈련을 통해 생활역량을 기르고 사회적응을 유도하는 발달장애청소년배움터 '트라이앵글'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나브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발달장애청소년배움터 '트라이앵글'은 ▽ 모양으로 맑은 심성(spirit), 바른 관점(mind), 건강한 몸(body)의 3가지 요소를 뜻하며, 3가지의 균형 잡힌 성장을 통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며 지역·가정·학교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자 하는 YMCA의 소명을 담아 운영한 광주YMCA 최초의 발달장애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트라이앵글은 크게 5개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사회적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트라이앵글교실’, 기초체력향상 및 각종 스포츠 활동을 진행하는 ‘토요체능교실’, 스트레스 해소 및 취미 계발을 위한 ‘난타교실’, 주말을 활용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오감만족’, 방학에 진행하는 ‘방학학교’, 그 밖에도 일본 요코하마 YMCA와의 국제교류캠프 등 청소년들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발달장애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트라이앵글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시나브로’는 초등4학년~중등3학년 발달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충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도예, 스포츠, 제과제빵, 난타, 춤놀이, 창의미술, 원예활동 등), 주말체험활동, 생활지원, 급식지원 등 발달장애청소년들의 몸, 마음, 일상 생활 전반에 있어서 성장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소속감을 느끼며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이를 충족시켜줄 프로그램이 없어서 자녀의 사회적응(참여)에 대한 걱정을 가집니다. 광주 YMCA 발달장애 프로그램은 광산구청소년수련관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비장애인들과도 자연스럽게 접촉하며 시나브로, 트라이앵글을 통해 또래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치료실 등 타 시설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자극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이는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며, 시간적 경제적 양육 부담 절감으로 학부모 만족도 또한 높은 편입니다.

‘친구들과 마음껏 놀 수 있어서 좋아요’, ‘춤 놀이가 좋아요.’, ‘선생님들이 좋아요.’, ‘토요체험 활동 매일 하고 싶어요.’ 등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통해 소소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야기 하며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시나브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광주지역 내 많은 발달장애청소년이 광산구청 소년수련관을 거쳐 갔으며 선생님, 친구들과의 다양한 추억을 쌓으며 밝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나브로’부터 ‘트라이앵글’ 과정까지의 발달장애청소년의 성장을 함께하는 광주YMCA! 앞으로의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개선 추진현황

류홍번 | 시민사회위원회 제도개선분과 간사 /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I. 시민사회 성장발전과 제도

- 왜 시민사회 성장과 활성화가 필요한가?

1. 사회 3분론- 국가, 시장, 시민사회

현대 사회 운영구조로 '3분 사회론'은 익히 알려진 바임. 국가(정부)-시장(기업)-시민사회(시민사회조직) 3영역으로 구분하고, 시민사회를 3섹터로 정의하고 있음.

과거 국가(1섹터)와 시장(2섹터) 중심의 사회가 실패하면서 3섹터로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 즉 국가와 시장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강한 시민사회 건설을 통한 사회발전 전략이 제시되고 있음.

2. 국가 발전전략으로서의 시민사회 활성화 추진

- 서구사회는 오래전부터 시민사회의 강화 및 활성화를 국가의 핵심전략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있음.(영국 토니블레어 정부, 미국 빌클린턴 정부, 독일 슈뢰더 정부 등)

- 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해 시장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 제도를 제정하며 지원체계를 구축하듯이, 시민사회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민사회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과 힘을 키우는 제도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국가와 정부의 책무로 인식하게 된 것임.

- 대표적으로 영국의 경우 1997년 '제 3의 길'¹⁾을 표방하며 집권에 성공한 노동당 토니블레어 정부는 영국이 처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한 시민사회 형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8년 정부와 시민사회 간 공동비전과 이행계획을 담은 『사회협약(The Compact)』을 체결하였고, 1999년에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간 사

1) 제3의길 : 국가와 시장 주도의 사회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강한 시민사회 건설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정책비전. "역동적인 시민사회를 배양하는 것이 제3의 길의 핵심적 부분"임(기든스, 1988).

회협약 체결해 사회협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음. 2010년에는 정부-시민사회간 파트너십을 통한 5개 목표를 담은 비전을 발표하였음. 이를 위해 정부 내 시민사회청을 신설하여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정부정책을 집중하였음. 토니블레이에 이어 당선된 보수당의 케머런 정부는 시민사회 발전전략으로 시민에게 더 많은 참여와 권한, 역할을 강화하는 「빅소사이어티」²⁾를 제시하고, 지역·마을 등 풀뿌리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강화한 2018년 ‘시민사회전략’을 발표하였음. 지방정부에서는 ‘자원봉사 및 공동체섹터 전략’을 수립하였음. 정치적 입장이 다른 영국의 두 정부 모두 급변하는 사회변화의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으로 시민사회 활성화, 강한 시민사회 형성을 추진하였고, 이를 위해 제도개선 및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왔음,

3. 한국사회의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전환되어야 할 시기

한국사회는 시민사회 영역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정책적·전략적 접근을 해본 경험이 없음. 시민사회는 자원봉사 또는 자립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로 인해 한국 시민사회에서 시민사회는 사회문제 해결 및 발전의 동력으로서 성장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체 제도나 정부구조에 편입되거나 재정 및 기반의 취약성 등으로 급격히 약화되는 상황을 맞이함.

김대중 정부 들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1999년)되어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실행되고, 노무현 정부에도 2003년 국무총리 산하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시민사회 정책이 부분적으로 정책화되었지만 정부 차원의 시민사회영역의 성장과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한 적은 없음.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과 정책, 지원체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함. 시민사회를 사회운동단체(애드보카시) 정도로 이해하는 편협한 시각을 넘어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 - 사회갈등 해결 및 통합,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 인권 및 시민권 보장, 민주주의적 질서유지 및 강화, 시민교육 등을 해결하는 시민 주체, 영역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자원봉사 영역이 아닌 국가 발전전략으로 정책화되는 영역으로 인식되어야 함,

II.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법제도 추진 현황 및 성과, 과제

1. 시민사회 관련 법 제도화 추진경과

1) 시민사회에서 시민사회 관련 제도 개선 공약 제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도개선 과제는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2017년 대선 당시 <시민사회 입법 및 제도개선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2) 빅소사이어티는 테러의 위협과 빈곤, 경제불황으로 양극화된 영국사회를 ‘붕괴된 사회’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사회참여, 커뮤니티 활성화, 이를 위한 시민사회 자원조직과 사회적기업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

- | | |
|------------------------------|------------------------|
| ①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 ② 시민사회 협치를 위한 시민사회처 설치 |
| ③ 소득세 1% 기부처 직접선택으로 납세자 주권강화 | ④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
| ⑤ 사회변화에 조용하는 비영리 공익법인 제도 혁신 | ⑥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법 제정 |
| ⑦ 제 3섹터 성장과 자립을 위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 ⑧ 민을 위한 공유재로 공공유희시설 활용 |
| ⑨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공익적 일자리 확대 | ⑩ 시민성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정책 쇄신 |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시민사회 관련 법 재개정 우선 과제로 「6대 입법과제」 제시.

- ① 시민사회발전기본법 ② 민주시민교육지원법 ③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⑤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⑥ 시민공제회법

2)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수용 및 국정과제로 채택

시민사회 요구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및 국정과제 일부로 반영되었음.

시민사회 성장 기반 관련 국정과제

국정과제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하위과제로

-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
-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제시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

-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 시민사회 지원을 위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 민주시민교육체계 수립: 민주화 운동사업기념회 산하 민주시민교실 또는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기부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 기부금 모집등록사업 확대
- 기부금의 모집 사용 현황 상시공개.
-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민사회 역할 확대 관련 국정과제

시민사회 역할 확대와 파트너십을 전제로 한 국정과제

국정과제 2: 빈부에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등)

국정과제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 개혁 (민주시민교육확대 등)

국정과제 8: 열린혁신정부, 서비스는 협정 (사회혁신기금 설치 등)

국정과제 12: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 됨)

국정과제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기본법, 좋은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마을자치 등)

국정과제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주민참여예산재확대 등)

국정과제 79: 도시재생뉴딜사업 발굴/지원, 지역역량 강화

2. 시민사회 관련 법안 추진현황 및 쟁점

1) 주요 법률 제개정 사항

- 시민사회발전기본법 ▪ 민주시민교육지원법 ▪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시행령, 지침 등 하위법령 주요 제개정사항

-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 제정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집행기준 개정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 운영매뉴얼 개정(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규정 삽입)
-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양식 및 공시제도 개선 등

3) 법률 제개정 추진 상황

법령명	추진 및 입법 현황	주요 내용 및 추진상황
① 시민사회발전기본법 (국정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대 국회 진선미의원(2018.3월) 권미혁의원(2019.1월) ⇒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 21대 국회 진선미의원(2021.1월) 민형배의원(202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과 역할: 시민사회 관련 총괄법이자 기본법으로 의미 국가의 책무로 시민사회 활성화 시책 의무화 규정 ▪ 민형배 법안 주요내용 및 쟁점(별첨2 참조) - (국가 지자체의 책무)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책무 규정 - (국가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국가기본계획 수립(행안부 협의안에는 5년) - (시행계획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매년 시행계획 수립(매년 실적 보고) - 시도지사 매년 시행계획 수립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 심의 의결 기구로 위원회 설치 - 시도지사 소속 시도위원회 설치 - (중간지원조직 설립) 국가(행안부) 산하 한국시민사회재단(재단법인) 설립 - 시도 산하 시민사회발전센터 설립 또는 지정 · · 시도 차원의 조례 재정 근거 마련 ▪ 진행상황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2개 법안(진선미, 민형배) - 주무부처인 행안부에서 시민사회발전기본법안 마련TF 구성하여 법안 합의
②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정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과 역할 -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 법안. 일부 활성화 및 지원기능 반영 - 시민사회 최초 행정기구로 '공익위원회' 설립, 관리감독 및 지원기구

법령명	추진 및 입법 현황	주요 내용 및 추진상황
<p>②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정과제)</p>	<p>● 20대 국회 이은권의원 (2017.2) 윤호중의원 (2017.8) ⇒ 임기만료로 자동폐기</p> <p>● 21대 국회 윤호중 발의 (2020.7) 법무부에서 전면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 예정 (4월) ⇒ 시민사회에서는 별도의 법안 발의 하지 않았음</p>	<p>■ 법안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안 목적: <u>시민공익법인에 대한 개별 주무관청 관리에서 시민공익 위원회에서 통합관리</u> - 법안성격: <u>관리 규제법 성격</u> - 추진체계: <u>행정위원회로 '시민공익위원회'를 행정기구로 설립</u> - 공익의 범위 확대: <u>학술, 자선, 장학사업에서 공익활동 전반으로 확대</u> - 시민공익법인 인정 및 감독제도 도입 <p>■ 법안 쟁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위원회 주무부처: 법무부 소속 & 국무총리실 소속 ⇒ 법무부안에는 법무부 소속/윤호중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규정 <u>시민단체의 경우 공익위원회의 독립성 차원에서 법무부 소속 반대</u> - 시민공익법인에 대한 지원: <u>규제에 비해 지원 및 활성화 부재</u> ⇒ 상중세법상 공익법인 34000여개에 비해 공익법인법상 시민공익 법인이 3400여개에 불과해 시민공익법인 등록할 수 있는 지원책 강화요구 * 그러나 법무부안이 정부 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포함되어 있었던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특례', '국공유지사용 특례', '독립성 보장 조항'마저 삭제되어 지원 및 독립성 규정이 사실상 배제된 상황임. <p>■ 진행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실 산하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서 시민공익위원회 독립성 확보와 시민공익법인에 대한 지원 활성화 내용을 법안에서 보완하도록 요구 - 법무부에서 4월 발의 예정 - 법안 내용에 대한 시민사회 내부에서 찬반의견 존재
<p>③ 민주시민교육지원법</p>	<p>● 20대 국회 - 남인순 의원 발의 - 소병훈 의원 발의 ⇒ 임기만료로 자동폐기</p> <p>● 21대 국회 - 남인순의원(2020.7월) - 한병도의의원(2020.12월)</p>	<p>■ 법안취지: 일상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시민의 자질과 역량 강화</p> <p>■ 법안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제7조) 및 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 수립 (제8조) - 심의 의결 기능의 행정안전부장관 소관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제12조) - 시도 민주시민교육센터 시군구 민주시민교육 학습기관 (설치/지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기관 활동 경비지급 가능 (제16조) <p>■ 주요쟁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부처 / 중간지원조직 설립방식(민주시민교육원 등) / 위원 구성 방식 <p>■ 진행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마련 TF 운영, 연구용역 수행. 즉 이전 반대 입장에서 추진 가능 입장으로 변화 -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에서 적극 추진 중

법령명	추진 및 입법 현황	주요 내용 및 추진상황
④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대 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미혁의원[2016. 8. 30.] - 진선미의원 발의검토 ⇒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 21대 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배의원 입법발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과 역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총괄 제도로서 기능 ▪ 진선미 법안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요건: 상시구성원수 100명 이상 ⇒ 30명 이상으로 완화 - 국가 기본계획 수립 : 5년마다 수립,시행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 정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에서 수립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위원회 설치 : 국무총리 소속 - 중앙 및 시도별 비영리민간단체 통합지원센터 지정,지원 - 우편요금 외에 통신요금 지원. - <u>보조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사업비 지원 원칙 개정</u> - <u>시설비 임대료 등 지원 용자, 국유 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사용</u> ▪ 진행상황 및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법안 검토과정에서는 시민사회발전기본법과 중복조항 고려해 추진체계 (위원회, 계획, 지원센터)관련의 조항은 삭제하고, 주로 지원내용만 반영
⑤ 기부금품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대 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개 발의 / 폐지 - 진선미의원 발의 - 이재정의원 발의 ⇒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 21대 국회: 18개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선미의원(2021. 1월) - 한정애의원(2021. 1월) - 박완주의원(2021.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과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 공익활동 촉진 및 자립을 위한 자율적 자원 마련 - 현행 「규제중심」의 조항에 「활성화 및 지원」 조항 강화 ▪ 진선미/이재정 법안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기준금액 상향조정 : 예, 1000원 ⇒ 3000만원 - 사후등록 및 변경등록 허용 : 초과시 15일 이내에 등록청 보고 - 공익법인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배제(기부금품법 특례 적용) - 기부금품 모집비용 비율 상향 : 예, 모집비용을 15/100 ⇒ 30/100 확대 (모집비용을 '모집비용' 과 '사업비용' 으로 분리하는 안도 제안된 상황임) - 형벌 규정 삭제 ⇒ '과태료로 전환' 또는 '시정 조치 후 처벌' 로 개정 ▪ 한정애 의원 법안내용: 행안부 의견이 반영된 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원 정의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 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자) - 사후 등록 허용 14일 이내 - 검사대상 사용행위 포함: 기존 모금행위만 포함. 추가로 사용행위 포함(국세청과 중복 보고 및규제를 이유로 시민단체 반대)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행안부에서 이미 구축 - 기부자장부 공개 요청: 미공개시 처벌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대 26개, 21대 현재 20개 법안 발의 - 대부분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한 규제, 처벌에 관한 법안이 다수임 - 시민단체, 자선단체, 모금단체 등이 공동대응 준비 중
⑥ 지방보조금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에서 대안입법으로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보조금의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규정되었으나, 지방재정법은 지방 재정 전반을 포괄하고 있어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한계를 노정. 별도의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대두

법령명	추진 및 입법 현황	주요 내용 및 추진상황
④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대 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미혁의원[2016. 8. 30.] - 진선미의원 발의검토 ⇒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 21대 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배의원 입법발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2020년 1월 12일 공포 / 7월 13일 시행) - 2021년 시행령 입법예고((2021.3.11~4.19)/5월 법제처심사/7.13일 시행 예정 ▪ 법안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제6조(지방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운영) ②..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3조(운영비 경비의 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 6조 제2항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 경비의 종목</u>’이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관리비 등으로서... 그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② 제 1항.. 운영비 경비의 종목 중 특정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로 본다. ▪ 한계 및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정으로 평가받았던 지방재정법 제32조 2의 2항 ‘법령에 명시적 근거 있는 경우 외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문제점 지적됨. - 다만 운영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시행령에서 특정기간 특정보조사업 수행에서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로 인정하고 있어, 특정 사업 수행에서 제외되었던 인건비를 사업수행비로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4) 시행령 및 하위법령 재개정 상황

①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정 (대통령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2020년 5월 26일 제정 ▪ 의미; 국가 최초로 「시민사회활성화를 국가 책무로 규정」 ▪ 주요내용 및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4기 시민사회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202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관급 위원회로 격상. 시민사회 정책 컨트롤타워 위상으로 강화 ② 국가 최초로 「국가 시민사회발전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실정 보고 의무화 ▪ 연구용역 완료(2020. 6~2021. 1월 /한국 행정연구원) ▪ 기본계획 수립 실무 TF운영(2021. 2월~4월) ▪ 기본계획 수립 초안 완료(2021. 6월) : 부처 회람 및 시민사회 공론화 예정 ③ 시도 시민사회위원회,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조례 제정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 작성/권고(2020. 12월) ▪ 전국 시도 순회간담회 개최 중(8개 시도 완료) ▪ 서울시, 충남, 울산 등에서 이미 조례 제정 ④ 시민사회 연구기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 정책 추진의 기반인 관련 연구/조사/통계 구축 기반 마련 - 시민사회 연구기관 지정으로 연구인프라 확대
--	---

<p>②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집행지침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집행지침 개정 - 의무조항이었던 자부담 제도가 폐지(자부담 시 가산점 부여) - 5종의 정산 서류를 3종으로 줄이는 등 정산 간소화. - 저평가되었던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경력 재산정 - 단체 임원 및 상근직원에게 감사비와 50% 내에서 예산편성 근거 마련. ▪ 다만 위 집행지침은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각 시도는 시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집행지침을 개정해야 적용이 가능함.
<p>③ 행안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 작성. - 2020. 9월 작성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위탁법인의 관리 수수료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예, 서울시 2% 반영 사례) - 계약방식에서의 지방계약법령의 기준 및 절차 적용 융통성 확대 등 ▪ 다만 위 가이드라인은 행안부의 권고안으로 시도의 적용과 집행은 각 시도에서 별도의 시행 및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가능함.
<p>④ 고용부 고용안정대책 운영메뉴얼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일자리 및 고용 지원규정과 매뉴얼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명확화 - 현행법으로 지원 가능. 그러나 매출과 수익 등 기업 중심 규정으로 현장에서 지원 안되는 사례 다수 ▪ 공익활동을 국가 고용 및 직업으로 인정, 일자리 통계 포함 - 행안부에서 시민사회 국가통계 계정 구축 2021년 연구용역과제로 추진 예정임
<p>⑤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제도 개선 및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제도 개선 - 중복보고(주무관청, 국세청, 행안부) 통합 및 공시양식 개선 요구 - 국세청에서 공시양식 부분 개정 및 3월 법인세법상 공시와 4월 상중세법상 의무공시 통합 4월로 공시 변경 ▪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온라인(화상) 총회 상시허용 - 다만 공중인이 온라인 총회를 진행하는 실제 장소에 직접 참석 의무규정 (공중인이 단순히 온라인(화상)으로만 총회에 참가하는 방식은 불가)

Ⅲ.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의 전환적 계기로서 대통령령 제정

1. 대통령령 제정의 의미

- 국가 최초의 시민사회 영역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시민사회 발전과 활성화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최초의 법령.
- 비영리 민간단체나 환경교육 등 영역별 공익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나 제도는 존재했으나, 3섹터로서의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활성화를 제도화하고, 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최초의 사례.
- 시민사회 발전 및 활성화 관련 법령이 대폭 확대·강화됨
- ‘국무총리 훈령’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상 격상

- 시민사회위원회라는 한정된 '기구' 중심 규정에서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이라는 내용 중심의 규정으로 확대.

▪ **시민사회활성화의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과 책임, 권한 강화**

-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 수립 과정, 시행 계획의 실행의 보고 등을 의무화
- 시민사회활성화의 제반 정책적·제도적 과제 등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 총괄기구 및 컨트롤타워 기구로서의 위상 강화.

▪ **지역시민사회 활성화의 제도적, 조직적 근거 마련**

- '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구성 및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 시·도계획 수립 가능. 이를 위한 '시도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조례' 제정가능.
- 서울시는 작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공표는 10월 5일)

▪ **시민사회 관련 연구기능 활성화 기반 마련**

- 현재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수립의 가장 큰 한계는 시민사회 관련 통계와 자료 부족임.
- 대통령은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의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사회 통계·자료 구축, 시민사회 정부정책 근거 마련 등 시민사회 연구 활성화의 강화 계기가 마련되었음.

2. 대통령령 제정 추진경과

- 2017년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운동 추진 -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법안검토 등
- 2019년 5월 10일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주최 시민사회 발전 대토론회에서 제안
- 2019년 6월~10월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시민사회TF 운영. 대통령령 초안 작성
- 2019년 12월 11일 : 입법예고(2019. 12. 11. ~ 2019. 12. 31.)
- 2020년 5월 12일 : 법제처심사완료(사무국 설치와 공익활동 정의조항 조정으로 심사가 길어짐)
- 2020년 5월 14일 : 차관회의 통과
- 2020년 5월 19일 : 국무회의 통과
- 2020년 5월 26일 : 공표/시행 (2019. 5월 대통령령이 제안된 지 1년 만에 제정)
- 2020년 8월 7일 : 4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구성(30인) 및 출범.

3. 대통령령의 주요내용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요약 (전체 규정 별첨 참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통해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 ① 정부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1. 시민사회의 자율성·다양성·독립성을 보장할 것
2.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민 공익활동의 가치를 존중할 것
3. 시민의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없앨 것
4. 시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공정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5.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소통·협력을 강화할 것

제3조(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추진과제
 3.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구축·강화 방안
 6.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자원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시민사회 소통·협력과 공익활동 증진 지원 방안 ...

제4조(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도 계획) 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시·도지사에게 시·도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송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민사회위원회) ①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증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정비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자율성·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에 관한 사항
 5.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시민참여 확산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부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국무총리비서실장

2. 시민사회단체 또는 학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등 시민사회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제13조(사·도 시민사회위원회) 사·도지사는 지역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지사 소속으로 사·도 시민사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①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정부위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2.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4. 시민사회 관련 현황·통계 조사

③ 지정권자는 연구기관에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IV. 시민사회활성화 표준조례 작성 및 권고

1. 추진 목적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13조에 근거 지자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제5조 : 사·도지사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 사·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제13조 : 사·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사·도지사 소속의 시민사회위원회를 둘 수 있음

2. 추진 경과

- 2020년 9월 : 소통협력분과, 표준조례안 마련 및 전국 확산 제안
- 2020년 10~12월 : 소통협력분과 중심 표준조례제정TF 구성 및 회의
- 2020년 12. 9~16 : 법제처 의견조회 및 소통협력분과 의견수렴
- 2020년 12.17~18 : 제2차 시민사회위원회 심의·의결
- 2021년 1월 : 표준조례안 , 광역 시도 공문시행

- 2021년 3월부터 표준조례 전국 시도 설명회 진행 중
(현재 대구, 울산, 충북, 전남, 경기, 대전, 부산, 제주 개최 완료)

3. 표준조례) 주요 내용

① 시·도지사의 책무(제2조)

- 시·도지사는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이 ▪ 시도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 이를 시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하
여야 하며 ▪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 수립(제5조)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제6조)

- 시·도는 시민사회공익활동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공표
- 기본계획 주요내용
 - 공익활동 여건의 진단평가 ▪ 기본목표 및 추진과제 ▪ 민관 및 시민사회간 협력 체계 강화
 -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교육·홍보 방안 ▪ 자원 규모와 조달방안 등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에 권고(제7조)

③ 시·도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성 :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를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시·도지사와 민간위원(호선)이 공동위원장, 국장급 이
상 부서장장이 간사를 함
- 기능 :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시민사회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 시민사회 참여 확산 ▪ 시·도, 시·군·구와 시민사회간 소통협력 등 심의·조정 등

④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 시·도지사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노력
- 1.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통계조사와 정책연구의 시행
- 2.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
- 3. 비영리일자리 지원, 비영리일자리 구인·구직, 교육 등 정보 제공
- 4.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의 구축

⑤ 그 외

- 시민사회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
- 공익활동 지원 조직을 설치하여 위탁·운영
-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시민, 기관 및 단체에 포상

4. 사례: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1) 추진경과

- 2013년 5월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 2018년 8월 :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공약
- 2019년 2~10월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권고 추진단(18명) 운영**
- 2019년 7~11월 :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 2020년 1월 : **공론과정 운영(11회)**을 거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 2020년 6월 : **조례개정을 위한 시민사회 정책설명회**
- 2020년 8월 : 시의회(신원철 의원) 주관 **조례개정 정책간담회**
- 2020년 9월 : 상임위 통과(3일). 본회의 통과(18일)
- 2020년 10월 : 조례공표 및 발효(5일)

2) 조례 구성 및 주요내용

- 조례 명칭
 - 대통령령의 명칭을 고려하되 시민사회 주도성을 강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확정.
- 조례 구성 : 전체 「5장-26조」 로 구성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1장 총칙	제4장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등
제1조(목적)	제13조(위원회 설치)
제2조(기본이념)	제14조(구성)
제3조(정의)	제15조(해촉)
제4조(시장의 책무 및 지원)	제16조(운영)
제5조(정책 수립과 집행의 원칙)	제17조(분과위원회 설치)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제18조(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협력 촉진)
	제19조(위원회 존속기간)
제2장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제5장 서울 NPO지원센터 설치 등
제7조(기본계획 수립)	제20조(설치)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공표)	제21조(기능)
제9조(자치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2조(센터의 위탁)
제3장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제23조(운영비 교부 및 정산)
제10조(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등)	제24조(센터의 운영)
제11조(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제25조(사용료 등)
제12조(시민사회 전담부서 지정)	제26조(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 조례 주요내용

- 제5조(정책 수립과 집행의 원칙)

1. 공익증진과 사회적 가치창출 역할의 주체로써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
2. 시민사회의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 보장
3. 경제적, 시간적 이유 등으로 시민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
4.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숙의 과정 이행
5. 시민사회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골고루 반영
6. 자치구의 시민사회 생태계를 존중하고 활성화 방안 지원
7. 시민사회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괄적 정책 추진

- 제11조(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사회의 수요에 따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협력 촉진) 위원회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영역별 연계·협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관계 중간지원조직 또는 민간협의체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20조(설치) 시장은 제 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와 권역별 NPO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 기능으로는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3.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 관련되는 교육·훈련·국내외 연수 등 인재육성
4.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상담·컨설팅
5.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6.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조사연구
7.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8.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조성과 운영
9. 그 밖에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서울시 조례의 특징

-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과 연계해 작성된 점.

- 이로 인해 풍부한 정책내용에 기반해 조례안이 작성.
-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증진 내용보다 훨씬 풍부한 조례로 재정

- 기존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을 전부 개정한 점

- 조례의 중복성 극복 및 정책의 통합성 확보

▪ 서울시 시민사회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조례라는 점

- 조례 내용 및 과정, 조례명 등에 있어서 서울시 시민사회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

- 예.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등」 신설(제10조)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 근거 신설(제11조)

「권역별NOP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제20조) 등

별첨자료 1> 영국의 시민사회 정책

1. 영국의 토니블러어 정부의 「사회협약 목표와 약속 - 2010 비전」

목표	정부·시민사회단체 임무	
<p>목표1. 강력하고 다양하며 독립적인 시민사회</p>	<p>정부</p>	<p>1.1. 시민사회단체의 독립성 존중 및 지원 1.2. 정부 협력 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자원지원 1.3. 국가 및 지역지원의 필요에 대한 내각의 인식 1.4. 시민사회단체의 데이터 및 정보 접근 향상 지원 1.5. 국가 소유의 부동산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 지원 등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법 고려 1.6. 자원봉사자들의 정보 접근 허용, 절차 간소화</p>
	<p>시민사회단체</p>	<p>1.7. 시민사회단체 캠페인, 지지활동에 대한 근거 제공 1.8. 재정적 또는 그 외 정부와의 관계에 상관없이 시민사회단체 대표 명분에 중점을 두고 독립적인 활동</p>
<p>목표2 정책, 프로그램 및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이 고, 투명하게 고안 및 개발</p>	<p>정부</p>	<p>2.1. 사회·환경·경제적 가치를 바탕으로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고안, 개발 등 2.2.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이 사회적 행동 장려와 지역사회 권한 부여 등에 미치는 영향 고려 등 2.3.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 고안 최초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등 2.4.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준비 기간 보장, 협의 등 2.5. 의견 청취와 의견에 대한 피드백 등 2.6. 새로운 정책, 입법 및 지침이 시민사회, 특히 소규모 단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p>
	<p>시민사회단체</p>	<p>2.7. 정부와의 협의 추진 및 그에 대한 대응 2.8. 정부 건의 시, 대표역량, 근거의 명확한 제공 2.9. 아이디어 제시할 때 증거기반 해결안 집중</p>
<p>목표3. 사용자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p>	<p>정부</p>	<p>3.1. 시민단체의 공공서비스 참여 기회 확대 등 3.2. 보조금, 계약, 대출금융, 부동산의 활용 등 시민사회단체에 자금 또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고려. 정부자금 접근 장벽 제거 등 3.3. 모든 자금 관련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공, 투명성 보장 3.4. 목적 달성을 위한 소요될 시간 반영 3.5. 목적과 성과 달성에 알맞은 적용 및 입찰 절차 등 3.6. 성과의 가치 평가, 관리 감독 방법 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합의 등 3.7. 계약 입찰 시, 동등한 처리 등 3.8. 시민사회단체의 보조금에 간접비용의 포함할 수 있음에 대한 인지 3.9. 주계약업체와 외주업체간 협약서의 원칙 준수, 위험 분담 등 3.10. 적절한 자금 및 자원 조달 모델 등 사항</p>

목표	정부·시민사회단체 임무	
	정부	3.11. 모든 관련 기관의 본 협약서 준수 의무 등 3.12. 유럽의 자금배분 시 본 협약서 적용 사항 등 3.13.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파트너십의 실효성 등에 대한 피드백을 공공의 영역에서 다룰 것 고려 등
	시민사회단체	3.14. 자금 제공의 적합성 보장, 성과 달성 방식 명료화 3.15. 자금 사용 시 자금 제공자에게 상황변화에 대한 사전 고지, 위험 관리 등 3.16. 내외부 모니터링, 개방적이고 투명한 보고 3.17. 해당되는 경우,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사회적, 환경적, 또는 경제적 가치 입증 3.18. 사용자 및 지역사회가 정부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독려 3.19.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자금을 제공받는 것에 대한 정부공개에 대한 타당성 인지
목표4. 프로그램 및 서비스 변경 관리를 위한 확실한 준비	정부	4.1. 재정적 관계 종결 발생 시 이전에 성과향상 조치 일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합의 4.2. 자금감축, 자금제공 종결 결정 시 파생 영향 평가 4.3. 미래의 자원에 대한 제약 또는 변화 발생 예측 시 시민사회단체와 논의, 대응기회 제공 등 4.4. 자금 제공 등 변경 시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고지, 분명한 이유 제공
	시민사회단체	4.5. 수혜자 및 해당 단체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금 종료에 대한 계획 수립 4.6. 프로그램 및 자금 제공에 대한 검토 시 긍정적으로 기여 4.7. 자금 제공변경이 미치는 각종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에 대해 정부에 자문

* 출처 : Office for Civil Society (www.cabinetoffice.gov.uk) 협약서 내용을 재구성

기후위기, 행동해야 희망이 찾아온다.

이윤기 | 광주YMCA 광산지회 관장



광주YMCA는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100년을 향한 5가지 약속 ‘우리는 한다’를 선언했다. ‘우리는 한다’는 기존의 선언문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동안의 선언문이 행동의 주체를 ‘광주YMCA’라고 봤다면 ‘우리는 한다’는 광주YMCA를 포함하여 광주YMCA를 구성하는 회원, 개개인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 우리는 모든 생명을 사랑한다.

‘우리는 한다’의 가장 첫 번째 실천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사랑’이며 YMCA운동도 이 세계와 생명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며 지구의 지속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힘은 ‘사랑’이다. 인간 역시 무생물체와 생명체가 어우러지는 지구촌 가족의 일원으로, 겸허한 자세로 자연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며 공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하나, 우리는 기후위기에 앞장서서 대응한다.

1988년 유엔환경계획과 세계기상기구가 뜻을 모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만들어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었다. IPCC 제1차 기후변화보고서에서 100년 동안 기온이 0.5도 상승했으며,

이산화탄소, 메탄, 염화불화탄소 등이 원인임을 밝혔으나 당시 기후변화는 과학자들의 관심사였을 뿐 세상은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21세기 들어 지구촌 여러 곳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면서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화두가 되었고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실감하기 시작했다. 과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 해수면이 얼마나 많이 상승하는지, 지구 평균 기온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에 대해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들 연구가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다. “지금 이대로 인류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기후변화를 방관하면 미래의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후위기의 피해자가 아닌 원인 제공자라는 사고의 전환이 절실하다. 사소한 행동이 머지않은 미래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그 짐을 후손들이 떠맡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범지구적이고 체계적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행동은 지역 내에서 우리 자신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지난 2021년 1월 한겨레 신문과 초록우산이 전국의 청소년(14-18살) 500명, 성인(19-59살) 500명을 대상으로 공동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은 42%가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끼는 반면, 성인은 19%만이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낀다고 한다. 어른들은 기후 위기를 언젠가 닥칠 내일의 문제로 여긴다면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문제로 여긴다. 200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기후위기를 일상으로 안고 살아야 하는 기후 세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청소년들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가 살아갈 지구 지키자”
“아픈 지구에 내 미래 없다”
“기성세대는 기후 위기 방관자”
“기후 위기를 바꿀 마지막 세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공부는 ‘지금’을 배우는 일이다. 기후위기의 실체를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 살아있는 교육, 미래가 있는 교육, 삶을 위한 교육이 가능해진다.

광주YMCA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구촌의 노력에 참여하며 ‘종이컵 안 쓰기’, ‘텀블러 사용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등 생활 속 실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후세대인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의 실체를 깨닫고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맘껏 외치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일,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성을 키우는 일에 주목한다.

광주YMCA가 운영하는 시설들은 청소년들로 들썩거린다.

당근센터(일곡청소년문화의집)는 청소년기후행동단을 만들어 지역 카페들과 함께 종이팩 순환활동과 자원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하이센터(광산구청소년수련관)는 버려진 것들을 모아 정크 팝업 놀이터, 정크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일곡마을과 침단마을에 제로웨이스트샵‘YMCA 지구별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침단전환마을네트워크와 함께 하이센터에 광주 에너지 카페 1호를 개소하여 에너지 교육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다.

11월에는 광산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광산 청소년기후행동축제’를 만들어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 시민들과 서로 만나고 어우러지는 청소년축제를 기획중에 있다.

서구청소년수련관(광주YMCA서구지회)은 2021년 광주YMCA 실천의제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청소년기후행동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환경과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 관심 분야 자료를 조사하고 접근방안을 도출하는 워크숍을 시작으로 ‘문화’ 및 ‘활동’으로 접근하였다.

먼저, 폐가구인 의자와 테이블을 활용하여 작가와 함께 공공예술작품으로 탄생시키는 <새로이 뚝! 뚝! 쓸모있는 재탄생> 문화활동이 진행 중이며, 수련관 이용자들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자원재생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쓰레기 없는 축제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3회 ‘youth 제로웨이스트’와 4회‘감자마켓(아나바다 장터)’은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천연비누만들기, 페트병리사이클볼링, 환경퀴즈, 분리수거 자유투 등 관련 체험을 준비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기후행동동아리 ‘환경서포터즈’와 ‘1.5°C(인류의 한계온도)’가 활동하고 있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관련 책(영상), 기관탐방 등 스스로 학습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실천방안을 찾고 다른 청소년들과 나누고자 한다. 분리배출 퀴즈, 분리배출 카드뉴스 제작, 일회용 빨대 사용하지 않기, 플라스틱 줄이기 등 ‘함께 실천하기’도 진행할 것이다.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튜베리가 기성세대에게 남긴 일갈은 얼마 남지 않은 기회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실함이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튜베리가 2018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테드 강연에서 한 말로 글을 맺는다. “우리에게 희망이 필요해요. 하지만 희망을 찾기보다는 행동을 해야해요. 행동을 해야 희망이 찾아옵니다.”

김홍빈 대장을 추모하며

강행욱 | 마나슬루 원정대 단장



광주YMCA 홍보대사로 봉사하던 김홍빈 대장과 나의 개인적인 인연은 2014년 마나슬루 원정대 단장을 내가 맡게 된 때부터이다. 윤장현 선배가 광주시장에 당선되면서 단장자리를 이근우 변호사님께 부탁했는데, 어찌 어찌해서 백두대간 종주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공이 나에게 넘어오게 되었다.

없는 인맥을 총동원하여 후원금을 만들고 겨우겨우 마나슬루 원정대를 꾸려 인천국제공항에까지 전송하고 돌아와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성공을 비는 기도밖에는 없었다.

정상공격일인 2014. 9. 25.에는 오후 내내 법정에서 가슴을 졸이다 오후 6시가 넘어 피길연 추진위원장에게서 김대장 일행이 마나슬루 등정에 성공하고 캠프3까지 하산 완료했다는 전화를 받고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 후 원정대 단장자리는 후원금 조성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게 억지로 떠맡기고, 나는 조금 짐을 벗은 상태에서 김대장의 계속되는 원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얼마 후 김대장은 로체 원정대원인 방영은 신부와 2016. 1. 3. 백년가약을 맺었고, 나는 하객으로 서울까지 가서 한복 두루마기를 입은 김대장과 사진을 찍었다.

나는 마나슬루 단장을 맡았을 때부터 등정의 성공은 안전한 하산과 귀





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귀가 닳도록 김대장에게 얘기를 하였고, 무사하게 광주에 돌아와 같이 소주잔을 맞댈 수 있어야 등정에 성공한 것이니 위험하면 무조건 철수하라고 충고하곤 했다.

겨우 백두대간 종주만 끝낸 초보 산꾼의 잔소리를 김홍빈 대장은 무시하지 않았고, 자기는 백두대간을 못 타봤으니 히말라야 14좌 완등을 끝내면 꼭 백두대간을 종주하겠노라고 약속도 했었다.

이제 그동안 있었던 많은 만남과 산행과 술자리의 추억들이 차가운 산 히말라야가 되어 버린 김대장 앞에서는 부질없고 서글프기만 하다.

겉많은 나는 안전하게 호남정맥 종주를 끝내고 땅끝기맥도 두 구간만 남기고 끝내가는 마당에 건강하기만 하니, 매번 칼날 능선과 벼랑 끝에 자신을 세웠던 김대장의 호연지기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제 고인을 슬픔 속에 떠나보내며 모든 것을 불태운 자리에서 되살아나는 불사조처럼 김홍빈 대장의 불굴의 도전정신과 신념이 우리 모두와 젊은 청년들의 가슴 속에 불꽃처럼 타오르길 기원한다.

그리하여 코로나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좋은 광주를 만드는 것이 김대장의 진정한 유지를 받드는 길일 것이다.

고인의 안식을 기원하며.



시민과 시민성

강의혁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 조교수



시민성을 논의하기 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떤 의미에서건 완성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현된 사회도 아니고 다양성과 차이가 이상적으로 실천되는 사회도 아니며 평등이 실현된 사회도 아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대의정치는 시민은 안중에 없는 정치인들만의 권력투쟁과 부패로 얼룩져 있으며, 흙수저-금수저 담론에서 적나라하게 보이듯 우리 사회는 서로의 개성과 소양을 인정하는 ‘차이’보다 차별적 구조가 일상의 전경을 이루고 있다. 또한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법적-형식적 수사(修辭)는 실질적인 경제적, 정치적, 성별적, 인종적, 그리고 문화적 불평등 앞에서 무력한 경우가 많다.

이런 정황이 비록 혼란스럽고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상적이고 이성적인 논리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전제한다면 현실의 부조리한 풍경은 엄청난 실망을 안겨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완벽한 평등이 실현된 사회는 없었다. 언제나 한 사회는 그 사회만의 역사적 부채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를 둘러싼 도전과 대응 방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 사회에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요인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흥결과 불완전성이야말로 오히려 시민을 정의와 평등의 추구로 이끌어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시민성은 바로 이런 불완전한 삶에 대한 인식과 결부되어 있다. 지금의 광주가 안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들이 제기하는 역사적 도전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바로 광주의 시민성이기 때문이다. 시민성은 나만의 진정성으로 투표에 참여하거나, 나 혼자만의 굳은 결의로 시민의식을 잘 지키리라 마음먹는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시민성이라는 개념은 복수적(複數的) 의미를 담고 있다. 시민성은 한 개인의 자질이나 의지를 지칭하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시민들’이 합의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가 시민성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성은 ‘나’의 삶이 아닌 ‘우리’ 삶의 불완전성을 규정하는 다양한 것들, 즉 시대적 불합리, 역사적 모순, 사

회적 불평등이 무엇인지를 공감하고 그 해결을 집단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솟아나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공동체의 삶에 대한 인식과 공감이 시민성의 핵심이라는 명제는 시민성이 ‘나’의 도덕성이나 정치적 신념을 주장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 기울일 수 있는가’라는 ‘경청’에 더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게 한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혹독한 도덕적 비판의 일침(一針)을 가하는 것은 그 비판의 주체를 고상하고 고고한 사람인 양 추켜세워 일시적 통쾌감을 줄 수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추동하기에는 무력하다. 실천이 결여한 도덕적 비판에의 매몰은 오히려 그 비판에 귀 기울여 공감하는 이들의 실천적 힘마저 빼앗아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시민성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상적인 시민사회에 대한 실천 없는 관념적 지향이나 대안 없는 도덕적 비판에 시민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처지에 공감하면서 작은 변화라도 일구어내려는 노력이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처한 문제를 ‘같이’ 직시하는 것이 시민성의 관건이라면 그 시민성을 향한 여정은 언제나 우리가 일상에서 겪어나가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나눔으로써 가능해진다. 장밋빛 이상과 도덕적 정결함이 시민성 논의의 출발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이 시민성의 역동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성은 미리 어떤 의제가 주어져 있는 것이라기보다 각각의 공동체가 스스로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합의를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나갈 것 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공동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합의하는 과정에 따라 그 공동체의 고유한 시민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형성된 시민문화가 후대에 기억되고 전승되면서 역사적 시민성의 면면한 줄기가 만들어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시민성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삶의 영역에 갇혀 있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삶을 집단적으로 고민하고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때 그 실체를 드러낸다. 우리는 IMF와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재난과 현대사의 질곡을 거치면서 개인적, 사적 영역이 정치적, 공적 영역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왔다.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는 개인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면서도 개인을 넘어서서 작동하는 역사적, 정치적 힘의 한계와 모순을 직시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가 힘을 모으는 집단적 지성과 실천의 과정을 통해 뚜렷이 드러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공공성(公共性)은 개인의 이익과 상치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시민성이 개인의 이익을 포기해야만 얻어지는 어떤 도덕적 순수가 아니라는 점 역시 주의해야 한다. 개인적 이익 관계로 점철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관계로 할 수 없는 것들, 즉 이익을 넘어선 차원에서 작동하는 민중과 역사의 힘을 인식하고 이를 더 나은 삶을 위한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합의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 과정이 시민성의 자리다.

기획특집

광주 YMCA 영화 산책

봉오동 전투 (2018) 1920년 죽음의 골짜기

•감독 : 원신연 •주연: 유해진, 류준열, 조우진

장현권 | 서정교회목사. 시인. 다큐 영화감독. 광주 YMCA 선교위원



고려인의 정신적 지주가 있다. ‘하늘을 나는 호랑이’로 불리던 홍범도 장군이다. 고려인들에게 민족을 단합시키고 민족의식을 깨우면서 고려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구심점이 되게 했던 장군이다.

2021년 8월 15일 광복 76주년을 맞이해서 홍범도 장군 유해가 봉환되었다. 장군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다. 우람한 체구에 힘이 장사다. 원래 산포수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일제탄압으로 국내에서 의병 활동이 어려워져 러시아 연해주로 망명생활을 하면서 활동을 지속했다. 그때 1920년 6월 봉오동 골짜기로 일본군을 유인해서 독립군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에 대한 영화가 바로 <봉오동 전투>이다. “임무는 단 하나! 달리고 달려, 일본군을 죽음의 골짜기로 유인하라는 것이다”.

1919년 3.1운동 이후 봉오동 일대에서 독립군의 무장 항쟁이 활발해진다. 영화 <봉오동 전투>는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첫 대규모 승리를 쟁취한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를 처음으로 영화화한 작품이다.



원신연 감독은 한 명의 영웅이 아닌 모두가 함께 일궈낸 첫 승리의 역사, 봉오동 전투에 단번에 매료되었다고 전했다.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전 몸이 먼저 반응했다. 시나리오를 읽어내려가는 내내 소름이 돋고,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일어서고 앉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내가 마치 그 시대 독립군이 된 기분이었다”고 <봉오동 전투>를 처음 마주했던 뜨거운 순간을 회고했다. 당시 봉오동에는 밟고 살 땅, 농사를 지을 땅, 죽어서 묻힐 땅을 찾겠다고 몰려든 전국의 이름 모를 독립군들로 가득했다.

그동안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영웅들의 이야기는 많았지만 이름 없는 영웅들을 들여다본 이야기는 많지 않았다. <봉오동 전투>는 어제 농사짓던 인물이 오늘

독립군이 되어 이름 모를 영웅으로 살아간 시간과 그들의 승리에 보여주는 영화이다. 기억되지 못하고, 한 줄의 기록조차 남겨지지 않았던 이들이 뜨겁게 저항해 쟁취한 승리가 바로 봉오동 전투이다.

원신연 감독은 “지금까지 영화들이 대부분 피해의 역사, 지배의 역사, 굴욕의 역사에 대해 다뤘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는 절망으로 점철된 시기가 아니라 희망과 용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다. 외면하고 싶은 아픈 역사가 아니라 기억해야 할 저항의 역사다”라며 일제 강점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기록하고 싶은 열망을 가졌다. 능선과 골짜기를 넘나드는 필사의 유인책!, 달리고 또 달리려는 것이다.

1920년 6월, 봉오동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승리가 탄생했다. 만주 일대의 독립군을 소탕하기 위해 모인 일본군은 수백 명, 하지만 독립군의 병력은 이들과 맞서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백전 무패로 악명 높은 월강 추격대를 필두로 남양수비대와 각종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 정예 병력을 상대로 독립군은 자신들이 가장 잘 아는 봉오동의 지형을 활용해 필사의 작전을 세우는 것이다.

영화 <봉오동 전투>는 목숨을 담보로 봉오동 죽음의 골짜기까지 달리고 또 달려 일본군을 유인, 고립시키고 그들에게 승리를 쟁취하기까지의 과정을 숨 가쁘고 박진감 넘치게 담아낸다. 능선과 계곡을 무기 삼아 매복과 공격을 반복하는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일본군에 맞서는 치열한 액션이 실 틈 없이 이어진다. 쏟아지는 총알을 피해 험준한 골짜기를 전력 질주하는 주인공들의 피땀 흐르는 모습



이 보는 관객마저 숨차게 만들고 있다.

이름 모를 독립군으로 돌아온 이야기다. 99년 전 독립군 역사에 기록된 첫 승리, 유해진, 류준열, 조우진이 역사적인 승리를 쟁취한 주인공으로 돌아온다.

광주에는 고려인 마을이 있다. 그들에게 정신적인 힘이 되었던 홍범도 장군에 관련된 유물 전시하는 특별전을 하고 있다. 고려인들이 삶과 아픔 가운데서도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조상들이 독립을 위해서 살아낸 민족정신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마지막에 홍범도 장군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에 공감한다. 그렇다 모든 것이 이제부터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성경에도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신32:7)



김숨의 소설 『떠도는 땅』 서평

김성식 | 문학박사. 조선이공대학교 명예교수, 오방 최홍종 기념사업회 감사

우리는 현진건의 소설, 『운수 좋은 날』을 읽으면서 인력거꾼 김 첨지의 아내가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설렁탕 한 그릇을 먹지 못하고 죽어가던 장면을 기억한다. 1920년대 가난한 사람들의 비극적 삶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소설을 소설사회학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가난이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결국 시대적 배경이 일제시대로, 그들의 착취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 그럼 김 첨지의 아내는 왜 한 달 동안 아파도 약 한 봉지 쓰지 못하고 죽어갔는가? 바로 가난 때문이다. 그 가난은 무엇 때문이었던가? 가난의 원인은 일본의 착취 때문이다. 결국 김 첨지의 아내를 죽인 범인은 일제라고 할 수 있다.

3부로 구성된 김숨의 『떠도는 땅』을 읽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떠돌 수밖에 없었던 사회학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러시아 연해주와 우리 민족이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1863년 함경도 농민 13세대가 이주하기 시작한 때부터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수탈에 못 이겨 더 많은 동포들이 넘어갔으며, 1920년대에는 17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

이 소설은 1937년 스탈린 정권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는, 50량이 넘는 화물열차라는 열악한 공간을 배경으로 열차에 실린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조선인들의 비극적인 삶, 오랜 시간 ‘뿌리내림’을 갈망했던 그들의 역사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하늘과 땅이 겨울 흑한에 얼어 생기가 막히고 흰 눈이 일색으로 덮여 있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날짐승의 날아감도 꿈어버리는 시베리아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참상이 그려지고 있다. 조상의 유골을 가져가려고 밤에 몰래 무덤을 파던 이야기, 조선인들을 만국민족이라고 집에서 쫓겨난 똥개 취급하던 러시아인 이야기, 하나님께 “굶지 않게 해 달라”고 한 가지 소원만 빌었다는 황노인 이야기, 추위와 굶주림으로 엄마 품에서 죽은 아이를 광목천으로 꿰뚫어 열차 창밖으로 던진 아버지 요섭과 아내 따냐 이야기...

가을 페르바야 레치카역을 떠난 열차가 겨울이 돼야야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그리고 버려진 땅에 도착해 겨울을 나는 동안 많은 사람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었고 이들은 그곳에서 고려인으로 불려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이 떠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일제는 소련 국경 안으로 피신한 독립운동가들을 추격할 수 없게 되자 스탈린에게 강력하게 항의했고, 국경 안정이 필요했던 스탈린은 일제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일소협약’을 맺고 조선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게 된 것이다. 결국 김 첨지의 아내를 죽게 한 것이 일제였듯이, 17만 조선인들을 러시아인들도 이주해 살기를 거부했던 죽음의 땅으로 내몰았던 주범은 일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궁극적으로는 일제의 침략을 불러들인 것은 대한제국의 부패와 무능이지만) 이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깊은 생각에 빠질 것이다. 지금 경기도 안산에 사는 15,000여 명과 광주(월곡동)에 사는 7,000여 명의 고려인 4세대는 누구의 잘못으로 아직도 이방인이 되어 떠돌고 있는가?

기획특집

한편의 詩

표경식 | 광주YMCA 이사

추천시

산행(山行)

두목(杜牧, 803~852)

遠上寒山石徑斜(원상한산석경사)

멀리 추운 산에 오르니 돌길이 비스듬한데

白雲生處有人家(백운생처유인가)

흰 구름 피어오르는 곳에 인가가 드문드문

停車坐愛楓林晚(정거좌애풍림만)

수레 멈춰선 것은 늦가을 단풍 숲이 보기 좋아서이니

霜葉紅於二月花(상엽홍어이월화)

서리 맞은 단풍이 봄꽃보다 붉구나

추천이유

광주YMCA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100년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길이 끝나는 곳이 다시 길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봄 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선배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춘 시절부터 지금까지, 직장에서 퇴임 이후에도 Y를 위해 헌신하시고 후배들의 멋진 배경이 되어주셨다. 때론 언덕 위에 줄지어 선 나무들이 아름다운 건 나무 뒤에서 말없이 나무들을 받아 안고 있는 여백처럼 선배님들은 우리들의 여백이 되어주셨다. 이분들은 하늘처럼 맑아 보이는 사람들이며, 하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다. 단풍으로 곱게 채색된 가을 산을 본 사람은 서리 맞은 단풍잎이 봄꽃보다 아름답다는 걸 느꼈을 것이다. 지금 원로 이사님들의 모습은 봄꽃보다 멋진 가을 단풍이다.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의 시 '산행(山行)'의 霜葉紅於二月花(서리 맞은 단풍잎이 봄꽃보다 붉구나) 구절이 가슴에 와닿는다.

광주YMCA 2021년 하반기 주요뉴스

(주)GYD와 (주)ALP글로벌에서 광주YMCA에 마스크 20만장 기증



지난 6월 25일(금) 15시 백제실에서 (주)GYD와 (주)ALP글로벌에서 광주YMCA에 코로나19 예방 및 극복을 위한 마스크 20만 장을 기부해 주셔서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기증받은 20만 장의 마스크는 광주지역 15개 사회복지기관, 5개 시민단체, 27개 청소년수련시설에 10만 장을 나누었으며, 앞으로도 마스크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눌 예정입니다. 이런 나눔 속에서 지역사회의

방역이 더욱 튼튼해지고 건강한 광주가 되길 바랍니다.

[6·15공동선언 발표 21돌]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광주시민 통일걷기' 진행



지난 6월 26일(토) 오전 9시, 광주 동구 푸른길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21돌]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광주시민 통일걷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 푸른길 (광주역 방향)입구에서 농장다리 앞까지 왕복 5km를 걸었습니다.

통일만보 걷기 운동은 4년 전 광주·전남 지역사회에 통일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해 시작되었고, 광주YMCA를 비롯해 광주흥사단, 전남대 민주동우회, 통일외병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해 온 통일 운동입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건강도 챙기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통일만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234-0074]

광주1호 "첨단전환마을 에너지카페" 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 2일(금) 11시, 광산구청소년수련관 1층 아시아피스커피가 ‘광주1호 첨단에너지카페’로 오픈했습니다. 첨단전환마을네트워크와 함께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주민들과 소통할 공간을 준비하였으며 관련된 체험 물품, 도서 및 에너지 절전 용품이 비치돼 있어 누구나 방문해 에너지 전환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에너지 독립을 이루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제로웨이스트 물품을 판매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카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함께 기후 위기에 직면하고 대응하며, 미래 세대가 계속해서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서구청소년어울림마당 S·S페스티벌!

지난 7월 17일(토) 12시부터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축제의 장 청소년어울림마당 “S·S(Summer&Science)페스티벌”을 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이 행사는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5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공연마당’, ‘놀이마당’, ‘먹거리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친환경 물병 오후만들기’, ‘벌레퇴치제 팔찌 및 선글라스 만들기’와 같은 체험부스도 운영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고,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빛나는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는 푸른꿈창작학교



푸른꿈창작학교 친구들은 지난 7월 17일(토) 1학기 과정을 마치며 무등산을 다녀왔습니다. 무등산 옛길을 따라 걸으며 그 곳의 역사적 이야기를 듣고 빠름보다 느림을, 혼자보다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움의 기쁨이 있고 친구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즐거움이 가득할 푸른꿈창작학교의 2학기,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자치경찰제 어떻게 안착할 것인가?' 를 주제로 101차 시민논단 개최



7월 27일(화) 14시 광주YMCA 무진관에서 '자치경찰제 어떻게 안착할 것인가?'를 주제로 101차 시민논단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시민논단은 광주YMCA와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 주관하였으며, 좌장으로 강행욱 변호사(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 발제자로는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최선우 교수(광주대 경찰법행정학부장), 토론자로는 김란희 대표(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회 상임대표), 신광식 변호사(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 조기선 이사(광주YMCA 시민운동위원장)가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광주형자치경찰제의 문제점과 필요성,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핵 발전소 없는 안전한 사회, 탈원전 피켓 캠페인 진행

7월 28일(수) 12시, 충장로 우체국 사거리에서 탈원전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광주YMCA는 핵 발전소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의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있으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12시, 우체국 앞에서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회원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광주YMCA 체육관 "어린이&청소년 농구교실" 개설



추억 속의 광주YMCA 체육관을 기억하시나요?
광주YMCA 무진관이 33농구가 가능한 체육관으로 재탄생하여, 7월부터 어린이&청소년 농구교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공기를 가르며 주고받는 농구공을 통해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을 배우고, 체력과 신장까지 기를 수 있는 농구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농구에 관심 있거나 배우고 싶은 유아, 초등, 중학생들은 회보 뒷면의 포스터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광주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고려인 마을 무료법률지원 상담



광주YMCA 시민권익변호인단의 고려인 마을 무료법률지원은 2017년 8월에 시작하여 4년째 계속 이어오고 있으며 총 601건의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7월에는 총 12건(임금체불 7건, 민사 2건, 기타 3건)을 법률지원을 하였고, 이 중 58%를 차지하는 임금체불로 인해 고려인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권익변호인단은 고려인들이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을 일삼는 악덕업체의 근절을 위해 소송구조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더불어 8월 9일(월) 19시에 코로나19 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변호인단에서 마스크 5000장을 고려인 마을에 기증하였습니다.

광주YMCA 유소년 야구단

순창고추장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첫 우승!



광주YMCA 유소년야구단이 8월 12일(목)부터 8월 17일(화)까지 진행되는 순창고추장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백호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예선전부터 3경기 모두 이기며 조 1위로 본선에 진출하고, 8강과 4강을 거쳐서 마지막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결승에서는 세종엔젤스와 치열한 경기를 펼친 끝에 5-4로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결승에서 아쉽게 승리를 양보했던 아이들에게 이번 대회의 우승이 매우 특별하게 느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즐겁게 야구를 즐기며, 튼튼하게 자라도록 광주YMCA는 더욱 노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배움터

Y해밀학교

행복한 지구시민이 되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 10명 (14세~20세)

홈페이지 www.iymca.or.kr

운영시간 월~금요일(12시~6시)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haemil/>
(광주ymca대안학교 해밀)

교육과정 지혜수업 : 수학, 과학, 영어, 사외,
국어논술, 역사

문의 062-234-0073 Y해밀학교

심성수업 : 미술, 문화예술, 목공, 칼링,
음악 밴드

주소 동구 금남로 246, 광주YMCA
다락방 작은학교 해밀(4층)

공동체활동 : 공동체발상, 여행, 학교밖체험,
사회참여활동, 자치회의

몸놀이 : 생활체육

경명고시 학습지원

입학절차 전화상담 / 면접상담(부모, 청소년상담)

